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7
----------	------

제출연월일: 2026. 3. 24.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 지원 종류에 백일해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 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18세 청소년 포함
(안 제3조제1항제1호라목)
- 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3조제1항제3호)
- 라. 백일해 등 예방접종 지원 횟수 규정(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지역보건법」 제11조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가족복지과-7960호, 2026. 2. 25.) 불수용

- (개선사항)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확대
제안

- (불수용사유) 예산 부담 증가, 조부모 및 외조부모와 영아와의 밀접
접촉 빈도 등을 고려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며, 울산
5개 구·군이 동일 기준으로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대상 확대 반영이 곤
란함

라. 입법예고: 2026. 2. 23. ~ 3. 16.(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 5년간 295백만원 정도(시 164백만원, 구 131백만원)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백일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8세 청소년

3. 백일해: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제4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백일해

가. 임신부: 매 임신 시마다 1회 지원

나. 배우자: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표준 접종 횟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 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예 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울 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p> <p><신설></p> <p>2. (생략)</p>	<p>제2조(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백일해</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 ----- -----.</p> <p>1. -----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18세 청소년</p> <p>2. (현행과 같음)</p>
<p><신설></p>	<p>3. 백일해: 신청일 현재 구에 주</p>

<p>3. (생략) ② (생략) 제4조(예방접종 지원 횟수) 제2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u>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u>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u> 나. <u>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예방접종 지원 횟수) ----- -----. 1.·2. (현행과 같음) 3. 백일해 가. <u>임산부: 매 임신 시마다 1회 지원</u> 나. <u>배우자: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회 지원</u></p> <p>4. <u>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표준 접종 횟수</u></p>
--	---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

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 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백신 구입 비용 및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시 접종 시행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백신 단가 및 시행비 단가 매년 1% 증가 예정

○ 접종 목표: 연간 1,742명

- 인플루엔자: 572명(18세 청소년 1,905명의 30%)

- 백 일 해: 1,170명(임산부 등록자수 약 1,170명×2(임산부·배우자)의 5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지출	인플루엔자	17	17	17	17	17	85
	백일해	41	42	42	42	43	210
	소 계(a)	58	59	59	59	60	295
수입	시	32	33	33	33	33	164
	구	26	26	26	26	27	131
	소 계(b)	58	59	59	59	60	295
총 비용(a-b)		0	0	0	0	0	0

※ 산정기준('26년): 백신비(인플루엔자 9,470원, 백일해 22,670원), 시행비(19,610원)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시 비	32	33	33	33	33	164
구 비	26	26	26	26	27	131
합 계	58	59	59	59	60	295

1. 부대의견: 없음

2. 협의사항: 없음

3. 작성자: 건강관리과 지방간호서기 권소형(052-290-4345)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연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시비	일반회계	32	33	33	33	33	164
구비	일반회계	26	26	26	26	27	131
합 계		58	59	59	59	60	295

2. 재원조달방안

- 시비 : 인플루엔자·백일해 예방접종 사업 교부금
- 구비 : 구 자체 수입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건강관리과 지방간호서기 권소형(☎052-290-4345)